

의안번호	제2375호	의결사항
의 년 결 월 일	2025. . .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출년월일	2025. 10. 28.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2375호
------------	--------

제출년월일 : 2025. 10. 28.
제 출 자 : 보은군수
(소관부서 : 경제정책실)

1. 제안이유

-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기업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재)충북 테크노파크 4차년도(2026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행안부 유권해석(2015.8.26.)에 따라 출자·출연 시 매년 사전 의결 필요

2. 주요내용

가. 동의안명: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

나. 법적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법적 근거
 -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 추진 필요성: (재)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5단계(2023년 ~2027년)에 출연함으로써 지역 내 중소기업이 충북테크노파크의 장비활용 및 인력양성 사업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개요

- 운영시기: 2026. 1. ~ 2026. 12.
- 기관현황
 -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 규모: 2단 6센터 1본부 2실
 - 기관성격: 출연기관
 - 주요사업: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 및 장비활용 지원

○ 기대효과

- 공모사업비 매칭으로 신규사업 발굴 지원
- 기업밀착형 인력양성으로 안정적 기업성장 기반 조성
- 장비 활용 등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라. 4차년도(2026년) 출자계획

- 출자금액: 20백만원

※ 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연도별 군비 출연 계획

(단위:백만원)

출자금액	연도별 출자금액					비고
	'23	'24	'25	'26	'27	
100	20	20	20	20	20	

3. 관계법령

-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0호)

명칭	위치	면적	지정일
충북 산업기술단지 (충북 테크노파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총287,008m ²	2003.12.29

4. 참고자료

○ 시·군별 4단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합 계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5,500,000
청 주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충 주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제 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보 은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옥 천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영 동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증 평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진 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괴 산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음 성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단 양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시·군별 5단계 출연금 요청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증감현황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합 계	2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6,500,000
청 주	-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충 주	10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제 천	1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보 은	-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옥 천	-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영 동	-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증 평	-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진 천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괴 산	-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음 성	-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단 양	-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4단계 출연금 보은군 기업지원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分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업지원 추진실적	3	56,300	3	209,000	10	125,094	5	35,300	21	237,594

【관계법령】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2.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지원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학,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의 차입금 및 수익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나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 회계(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성회의 회비와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국고회계 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사항】 행안부 회신자료(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제목 출자 또는 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질문

우리시는 매년 출자 또는 출연이 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의회에서 별도 사전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안 심의로 갈음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안 심의전에 별도로 사전 심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견 1. 신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만 사전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반복될 경우 예산안 심의로 갈음한다.

의견 2. 출자출연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때만 사전승인을 받고, 변동이 없을 경우 예산심의로 갈음한다.

의견 3. 모든 출자출연 발생시 예산심의와 별개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답변 2015.08.26 11:34:24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의결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별도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나 조례제정 과정과는 별개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등 항의 규정은 신규 출자출연기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출자출연에 대해 매년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의결을 받아야 하는 출연금의 금액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본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관부처 재정정책과 이혜성, 02-2100-3520